

# 비전임교원임용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「교원인사규정」 제3조 제3항에 따라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분)** 본 규정에서 정하는 비전임교원의 직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명예교원: 명예교수, 행단석좌교수, 문행석좌교수
2. 초빙교원: 초빙교수, 대우교수, 겸임교수, 교환교수
3. 석좌교원: 석좌교수, 특임교수
4. 연구교원: 연구교수
5. 산학교원: 산학교수

**제3조(정의)** 본 규정에서 정하는 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명예교수: 본교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상의 공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본 규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교원을 말한다.
2. 행단석좌교수: 정년보장(본교에서 정년보장 이후 최소 10년 이상 재직을 원칙으로 함) 이후 교육 및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로서 교육·연구에 종사하도록 위촉된 교원을 말한다.
3. 문행석좌교수: 정년보장 이후 교육 및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로서 기금, 대외연구비 유치로 교육·연구에 종사하도록 위촉된 교원을 말한다.
4. 초빙교수: 교육 또는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로서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·연구에 종사하도록 위촉된 교원을 말한다.
5. 대우교수: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로서 본교에서 일정 기간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교원을 말한다.
6. 겸임교수: 산업체, 연구소, 기타 권위있는 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교육에 종사하도록 위촉된 교원을 말한다.
7. 교환교수: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·연구에 종사하도록 위촉된 교원을 말한다.
8. 석좌교수: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를 교내·외에서 선임하여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재원으로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.
9. 특임교수: 교육·연구 업적이 탁월하거나 사회적 경력과 명망이 높은 자로서 교육·연구를 담당하도록 위촉된 교원을 말한다.
10. 연구교수: 본교 대학, 부설연구기관 또는 부속기관의 연구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연구에 종사할 교원을 말한다.
11. 산학교수: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창업·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할 수 있는 교원을 말한다.

**제4조(임용기간 및 구비서류)** 본 규정에서 정한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 등은 별표와 같다.

**제5조(임용연령)** 비전임교원은 만 69세까지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명예교수는 예외로 한다.

**제6조(개별계약의 원칙)** 비전임교원의 임용계약은 개별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사이에서도 계약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**제7조(당연 퇴직)**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.

**제7조의2(교육의 수월성)** ①제2조제2호의 초빙교원은 본교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교과 배정과 임용 관리를 한다.

1. 강의평가 75점 이하 과목의 차학기 동일 교과목 배정 불가
2. 2개 학기 연속 강의평가 75점 이하인 교과목이 있는 경우 임용 불가

②비전임교원은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없다. 다만, 별도 계약에 의한 경우는 따로 정한다.

**제8조(직위해제, 해임 및 징계)** 비전임교원의 직위해제, 해임 및 징계는 이사장으로부터 총장이 위임받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, 학과의 폐과에 의하거나 과원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9조(학술활동)** 비전임교원은 발표논문 또는 학술활동에서 본교 소속임을 밝힌다.

**제10조(교수회의참여)** 비전임교원은 학과, 대학 및 전체 교수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**제11조(세칙)**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 제 2 장 명예교원

### 제 1 절 명예교수

**제12조(추대자격)** 명예교수는 본교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상의 공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본교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. 다만, 본교에서 15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자의 경우 전적대학 재직경력을 합산할 수 있다.
2. 신설 학과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정년퇴직한 자 중 본교와 전적대학 전임교원 근무기간 합산이 20년을 초과한 자(단, 신설 학과는 설치 후 20년이 되는 해까지 적용)
3. 재직기간 중 본교 Fellowship교원으로 선정 후 정년퇴직한 자

**제13조(추대절차)** 명예교수 추대는 다음 절차에 의한다.

1. 제12조에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퇴직 당시 소속 학장이 총장에게 추천한다.
2. 총장은 소속 학장의 추천이 있을 때 명예교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추대여부를 심의한다.
3. 총장이 명예교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한 자를 이사장이 명예교수로 추대한다.

**제14조(명예교수심의위원회)** ①명예교수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부총장, 일반대학원장, 소속 학장, 교무처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이 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5조(위원회 임무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.

1. 명예교수로 추천된 자의 교육 및 학술상의 공적
2. 명예교수 자격 박탈 및 회복
3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16조(복무)**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그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강의를 할 수 있다.

**제17조(처우)** ①명예교수에게 특별한 연구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명예교수는 본교 제 의식에 있어서 본교 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.

**제18조(자격정지 및 회복)** ①명예교수가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총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직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②상기 제1항의 사유로 명예교수직이 정지된 경우,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본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직을 회복할 수 있다.

### 제 2 절 행단석좌교수

**제19조(자격)** 행단석좌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퇴직하는 교원 중에 정년보장(본교에서 정년보장 이후 최소 10년 이상 재직을 원칙으로 함) 이후 교육 및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교육 및 연구 업적이 탁월하여 대내외적으로 명망을 얻고 있는 교원
2. 업적이 탁월하며 대외적으로 권위 있는 상의 수상 또는 수상후보로 거론되는 교원
3. 삭제

**제20조(추대절차)** 행단석좌교수의 추대는 다음 절차에 의한다.

1. 본인의 신청과 퇴직 당시 소속 학장이 총장에게 추천한다.
2. 총장은 PTR위원회(Post-Tenure Review/Reward Committee)에서 추대 여부를 심의한다.
3.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한 자를 이사장이 행단석좌교수로 추대한다.

**제21조(처우)** ①행단석좌교수의 처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행단석좌교수는 본교 제 의식에 있어서 본교 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.

**제22조(강의의무)** <삭제>

### 제 3 절 문행석좌교수

**제23조(자격)** 문행석좌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퇴직하는 교원 중에 정년보장 이후 교육 및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로서 기금, 대외연구비 유치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추대할 수 있다.

**제24조(추대절차)** 행단석좌교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25조(처우)** ①문행석좌교수의 처우는 유치한 기금, 대외연구비에서 지급한다. 단, 기금유치의 경우 활용 계획을 심사한 후 기금내에서 정한다.

②문행석좌교수는 본교 제 의식에 있어서 본교 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.

### 제 3 장 초빙교원

#### 제 1 절 초빙교수

**제26조(자격)** 초빙교수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.

1. 국내외 대학, 연구기관의 전·현직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서 일정 기간 본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에 참여할 자
2. 사회적으로 명망있고 경력과 식견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
3. 박사학위 소지자

**제27조(임용절차)** 초빙교수는 학과장의 제청을 받아 학장이 추천한 자(부속·부설기관은 해당 기관장이 추천한 자)를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.

**제28조(처우)** 초빙교수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본교의 규정에 따른 논문지도료 및 강사료(강사 기준)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29조** 삭제

#### 제 2 절 대우교수

**제30조(자격)** 대우교수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.

1.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로서 본교에서 일정 기간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

## 2. 박사학위 소지자

**제31조(임용절차)** ①대우교수는 학과장의 제청을 받아 학장이 추천한 자(부속·부설기관은 해당 기관장이 추천한 자)를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.

②대우교수는 필요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.

**제32조(처우)** ①대우교수 보수는 매 학년도 예산 범위 안에서 별도 계약에 따라 강사료(강사 기준) 또는 특별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특별연구비 대상자는 책임학점을 초과할 경우 초과강의료(전임교원기준)를 가산 지급한다.

**제33조(책임학점)** 대우교수 책임학점은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나 별도 계약에 의한 경우는 따로 정한다.

## 제 3 절 겸임교수

**제34조 삭제**

**제35조(자격)** 겸임교수 임용대상자는 산업체, 연구소, 대학, 기타 권위있는 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.

**제36조(임용절차)** 겸임교수는 학과장의 제청을 받아 학장이 추천한 자를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.

**제37조(처우)** 겸임교수 처우는 실제로 강의한 시간에 대하여 강의료(강사 기준)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, 특별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38조(복무)** 겸임교수는 학기당 2학점 이상 9학점 이내의 강의를 담당하되, 별도 계약에 의한 경우는 따로 정한다.

## 제 4 절 교환교수

**제39조(자격)** 교환교수 임용대상자는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협력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

**제40조(임용절차)** 교환교수는 학과장의 제청을 받아 학장이 추천한 자를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.

**제41조(처우)** 교환교수 처우는 별도 계약에 의하며, 특별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42조(복무)** 교환교수에게 강의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 4 장 석좌교원

### 제 1 절 석좌교수

**제43조(자격)** 석좌교수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특정 전공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명망이 높은 자
2. 과학기술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세계적 수준의 발명이나 특허를 얻은 자
3. 학술원 또는 예술원 회원
4. 국내외 권위있는 학술상을 수상한 자

**제44조(명칭)** 석좌교수는 기부금 출연자 또는 출연기관이 지정하는 명의를 그 앞에 붙여 “○○석좌교수”라고 불릴 수 있다.

**제45조(임용절차)** ①석좌교수는 해당 학장 또는 총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.

②석좌교수 추천서는 학기 개시 2개월 전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석좌교수 임용에 대해서는 본교 「교원인사규정」을 준용한다.

**제46조(임무)** ①석좌교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강의 또는 연구
2. 특별강연 및 세미나
3. 기타 본교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

②삭제

**제47조(처우)** ①석좌교수의 보수는 당해 기부금 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되, 특별 재원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이에 기초한 계약내용을 적용한다.

②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48조(기금관리)** 석좌교수제도의 운영기금은 본교 기획조정처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총장은 필요에 따라 기부금 부담기관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## 제 2 절 특임교수

**제49조(자격)** 특임교수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국내 외 대학 전·현직 전임교원으로서 일정 기간 본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에 참여할 자
2. 사회적으로 명망있고 경력과 식견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

**제50조(명칭)** 특임교수는 기부금 출연자 또는 출연기관이 지정하는 명의를 그 앞에 붙여 “○○특임교수”라고 불릴 수 있다.

**제51조(임용절차)** ①특임교수는 해당 학장 또는 총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.

②특임교수 추천서는 학기 개시 2개월 전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특임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「교원인사규정」을 준용한다.

**제52조(임무)** ①특임교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강의 또는 연구
2. 특별강연 및 세미나
3. 본교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
4. 기타 총장이 특별히 부여하는 사항

②삭제

**제53조(처우)** 특임교수의 보수는 당해 기부금이나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원에 따르는 경우는 이에 기초한 계약내용에 따른다.

**제54조(기금관리)** 특임교수의 운영기금은 본교 기획조정처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총장은 필요에 따라 기부금 부담기관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## 제 5 장 연구교원

### 제 1 절 연구교수

**제55조(자격)** 연구교수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.

1. 박사학위 소지자
2. 연구원 경력 1년 이상자
3. 총장이 정하는 기준(과제 규모, 논문 실적, 급여 재원 확보 등) 충족

**제56조(임용절차)** ①연구교수는 학장(부속·부설기관은 해당 기관장)이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 자를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.

②연구교수의 추천권자는 해당 연구교수가 임용기간 동안 수령할 보수총액의 120%에 해당하는 재원을 예치하거나 공인된 연구비 지원기관의 연구비지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교비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57조(임용기간)** 연구교수는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, 당해 임용기간의 업적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. 다만,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의 임용기간은 연구비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**제58조(처우)** ①연구교수에게는 제56조제3항의 재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. 다만,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교수에 대한 보수가 따로 책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②연구교수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외에 본교의 규정에 따라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강의료(전임교원 초과강의료)를 지급할 수 있다.

③연구교수는 본교에 재직하는 동안 학교의 제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**제59조(복무)** 연구교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교 교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.

1. 연구교수는 연구에 전념하되, 필요에 따라 본교 강의와 학생지도를 할 수 있다.
2. 연구교수는 다른 대학에 출강할 수 없다. 단, 총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3. 소속기관장은 매 학기말 연구교수에 대한 연구실적평가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구실적은 본교 명의 소속만을 인정한다.

**제60조(준용규정 및 세부사항)** ①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,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②연구교원 임용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## 제 6 장 산학교원

### 제 1 절 산학교수

**제61조(자격)** 산학교수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.

1.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
2. 박사학위 소지자

**제62조(임용절차)** 산학교수의 임용은 학장(부속·부설기관은 해당 기관장)의 제청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.

**제63조(임무)** ①산학교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산학교수는 산학협력업무에 전담하되, 필요에 따라 본교 강의 및 학생지도를 할 수 있다.
2. 소속 기관장은 매 학년말 산학교수의 연구 및 산학협력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구 및 산학실적은 본교 명의 소속만을 인정한다.

②산학교수는 학장(부속·부설기관은 해당 기관장)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허가를 득하여 다른 대학에 출강할 수 있다.

**제64조(준용규정 및 세부사항)** ①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, 외부기관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②산학교수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「명예교수규정」, 「석좌교수및객원교수임용규정」, 「초빙교원임용규정」, 「대우전임교원임용규정」, 「겸임교수임용규정」, 「외국인교원임용규정」, 「연구교원임용규정」, 「산학협력전담교수임용규정」, 「연구교원임용규정시행세칙」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본교의 제규정 중에서 ‘산학협력전담교원(교수)’은 ‘산학교원(교수)’으로 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본교의 제규정 중에서 ‘객원교수’를 ‘특임교수’로 개정한다.

(별표) 비전임교원 임용기간 등

직종	임용기간	보수(책임학점)	비고
명예교원	명예교수	종신	-
	행단석좌교수 문행석좌교수	2년 이내, 재임용 가능(1회 한정)	별도 계약
초빙교원	초빙교수	2년 이내, 재임용 가능	강사료
	대우교수	2년 이내, 재임용 가능	별도 계약 (9학점/학기)
	겸임교수	1년 이내, 재임용 가능	강사료
	교환교수	1년 이내, 재임용 가능	별도 계약 (6학점/학기)
석좌교원	석좌교수 특임교수	2년 이내, 재임용 가능	미지급 또는 별도 계약
연구교원	연구교수	3년 이내, 재임용 가능	별도 계약 (6학점이내/학기)
산학교원	산학교수	1년 이내, 재임용 가능	별도 계약 (6학점이내/학기)

※ '보수(정액) 미지급시, 강의료 지급' 또는 '보수(정액) 지급시, 강의료 미지급' 원칙

※ 비전임교원의 재직기간은 통산 6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